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77-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7개동 총 1,5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형	총 세대수	배정호수	세대별 공급면적(㎡)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84A	591	60	84.9499	24.7296	109.6795	
84B	419	42	84.8803	28.3668	113.2471	
84C	196	20	84.9831	26.0407	111.0238	
108	369	대상 아님	108.5276	30.1335	138.6611	
소계	1,575	122	-	-	-	

- ※ 상기 내역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 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총 122세대

(단위:세대)

구 분		84A		84B		84C		합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장애인	광주광역시	12	(60)	9	(45)	4	(20)	25	(125)
	전라남도	6	(30)	4	(20)	2	(10)	12	(60)
국가 유공자 등		12	(60)	8	(40)	4	(20)	24	(120)
장기복무 제대군인		6	(30)	4	(20)	2	(10)	12	(60)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2	(60)	9	(45)	4	(20)	25	(125)
중소기업 근로자		12	(60)	8	(40)	4	(20)	24	(120)
소 계		60	(300)	42	(210)	20	(100)	122	(610)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상기 내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 [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24.01.26.(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http://gj-jns.com)
• 견본주택 개관	2024.01.26.(예정)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75) (☎062-364-0001)
• 특별공급 접수 (인터넷 청약 원칙)	2024.02.05.(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09:00~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 당첨자 발표	2024.02.16.(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09:00~17:30]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자격 입증 서류 지참)

II

특별공급자격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2023.11.10.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공급신청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주택공급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 등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전라남도)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흥부부 특별공급 등 기타 특별공급 포함)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III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흥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